

#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65호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2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4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51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8호 공시송달 공고 ..... 6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06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1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2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3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4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3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5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회 람									
--------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1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9. 15.

## 인천광역시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9,33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4번지	40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5번지	118	

### 2. 해제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제

### 3.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49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9. 15.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3번지 일원(승의운동장)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승의운동장(인천축구전용경기장) 용도변경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100,743.7㎡(승의운동장) 중 62,155.1㎡(인천축구전용경기장)
- 규 모: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가동 1층(663.11㎡) 용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가동 지상1층	판매시설(상점)	2,739.30	판매시설(상점)	2,076.19	감 663.11
			노유자시설(어린이집)	663.11	증 663.11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5. 사업기간: 2022. 9. 8. ~ 2022. 9.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51호

##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 인천광역시장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의회의원		석정규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부	인성정보	505	매각	1,217	2022-08-08	키움닷컴증권
부	이지바이오	369	매각	1,691	2022-08-08	키움닷컴증권
부	네오이문택	54	매각	266	2022-08-08	키움닷컴증권
부	SGC에너지	31	매각	1,209	2022-08-08	키움닷컴증권
부	유니크	200	매각	1,35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한국선재	383	매각	1,779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한국선재	838	매각	3,896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한국선재	679	매각	3,16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자연과환경	1,001	매각	1,546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SMC&C	500	매각	2,10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버킷스튜디오	200	매각	558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우리바이오	200	매각	768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부	에넥스	500	매각	85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남해화학	100	매각	978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22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22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6	매각	446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36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36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49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53	2022-08-17	키움닷컴증권
부	경남스틸	61	매각	269	2022-08-18	키움닷컴증권
부	박셀바이오	3	매각	243	2022-08-18	키움닷컴증권
부	푸른기술	55	매각	469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화신정공	700	매각	1,183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현대공업	59	매각	461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바이오로그디바이스	319	매각	429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켄온	500	매각	1,43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아이스크림에듀	500	매각	2,68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유일로보틱스	100	매각	3,120	2022-08-09	키움닷컴증권
부	동양철관	1,578	매각	1,735	2022-08-09	키움닷컴증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8호

## 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 인천광역시장

### 가. 과태료 납부독촉 대상자

상 호	주 소	반 송 사 유	과태료 금 액	납부기한
(주)서부산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117번길 **	폐문부재	<u>11,916원</u>	2022.09.30.
(주)혜인종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층*, *호(구월동, 일류빌딩)	수취인 불명	<u>1,770,000원</u>	2022.09.30.
대우송도** (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청천동)	주소지 불명	<u>1,770,000원</u>	2022.09.30.
(주)에스에스종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50번길 101, *층(연수동, 광용빌딩)	수취인 불명	<u>419,500원</u>	2022.09.30.
에스씨제일** (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70, ***호(중산동, 메디피아)	이사	<u>1,752,500원</u>	2022.09.30.
(주)노블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6, ****호(송도동)	수취인 불명	<u>317,500원</u>	2022.09.30.
(주)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 (동춘동)	폐문부재	<u>1,270,000원</u>	2022.09.30.

※ 납부기한 이후 체납시 최장 60개월 간 증가산금 부과

나.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30.

다. 기타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99)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06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제10조(존속기한)에 의한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0조 개정)

### 3. 자치법규안: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해진 주무관(전화번호: 032-440-3736, 팩스: 032-440-8692, 전자메일: jmhj101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별첨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u>2027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홍 창 호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1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등 개정에 따른 연계성 유지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기관명 변경 등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위원임기 및 승계방법 명시(안 제3조의2)
- 다. 화상·서면회의 등 비대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 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신설(안 제4조제5항)
- 마.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와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4조의2)
- 바. 통합방위 실무소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2)
- 사.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비상대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남지현(전화 032-440-5763 / 팩스032-440-8742 / 전자메일 andynam@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분기 1회 소집함”을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4호 중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 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담당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⑤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방위협의회

제5조의2 (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을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로 구성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취약지역”을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주민신고”를 “주민신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곳에 대하여”를 “곳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수에 대하여”를 “호수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순찰활동의 실시”를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협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u>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u></p> <p>1. ~ 7. (생략)</p> <p>8. <u>국군제7302부대장</u></p> <p>9. <u>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u></p> <p>10. <u>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u></p> <p>11. ~ 16. (생략)</p> <p>17. <u>그 밖에 협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lt;신설&gt;</p>	<p>제3조 (협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u></p> <p>9. <u>인천광역시경찰청장</u></p> <p>10. <u>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u></p> <p>11. ~ 16. (현행과 같음)</p> <p>17. <u>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제3조의2 (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u></p> <p>② <u>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협의회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 과장

5. 경찰담당간사: 인천지방경찰청 작전담당 과장

6. (생략)

제4조 (협의회회의 운영) ① -----  
-----  
----- 분기  
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  
-----  
-----.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통합방위담당과장, 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과장

5. 경찰담당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⑤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 (협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방위협의회

<신 설>

제5조의2 (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지원본부) ① 인천광역시

제6조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



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략)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의 조직

라. ~ 바. (생략)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 라. (생략)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생략)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설치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다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주민신고망 -----

라. ~ 바. (현행과 같음)

2. ----- 곳에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호수에는 -----

가. (현행과 같음)

나. -----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

제8조 (운영규칙) -- 조례에서 --  
-----  
-----  
-----.

## 붙임 2.

## &lt;관계법령&gt;

## □ 「통합방위법」

제7조(협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2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안 제9조의2)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 : 매립지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고지영(전화번호 032-440-8283, 팩스번호 032-440-8684, 전자메일goko8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9조의2(존속기한) ----- <u>2026년 6월 30일까지</u> -----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3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상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매립지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고지영(전화번호 032-440-8283, 팩스번호 032-440-8684, 전자메일 goko8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준속기한)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u>&lt;삭 제&gt;</u>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4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5.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했던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완료(2017.12.2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30. 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3.2. 제정·시행되어 동 조례 유지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2007. 3. 1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 고시되었던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 송

의운동장 도시균형발전사업)은 2017. 12. 29. 사업완료.

- 동 조례 제16조(용적률 완화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된 용적률 완화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2019.8.27.)되어 행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음.
- 광역적 단위의 재정비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물리·환경적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법이 없는 행정조례로서 제정된 동 조례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생정책과, 전화: 032-440-44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7-25 조례 제 03831호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 4069호

(일부개정) 2008-03-31 조례 제 4163호

(일부개정) 2013-07-29 조례 제 526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 5525호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5601호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도시 재생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재생사업, 제3호의 군·구 균형발전사업 및 제4호의 시민편익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군·구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민편익시설확충사업"이라 함은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지구"라 함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계적·지속적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구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 제2장 계획수립과 사업지구지정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되어야 한다.

1. 도시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시균형발전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3. 주거환경정비와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
4. 문화·복지와 교육
5.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등

제4조 (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 기타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③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지방세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의 해당 조례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구지정)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여 사업지구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①사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기성시가지를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주거, 상업, 업무, 관광과 숙박 등 복합적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는 사업지역과 역세권 개발 지역
2. 수변 및 녹지 공간의 활용 또는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보존·복원 등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3. 기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지역과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과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과 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지구지정 심의)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지구가 제11조 각호의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구역과 같은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지정의 실효) ① 제9조의 지정고시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시행방식)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

제12조 (사업시행절차)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군수·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각의 사업시행 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장 사업지원 등

제13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금융지원) ①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17조제4호의 기금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다.

1.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집단화조성신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학원 유치지역 내의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중 종합병원
6. 기타 시장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지구 안에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호의 기금으로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용자 지원조건은 각각의 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지방세 감면)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1.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 시장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6조 (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사업지구 안의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 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비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에 대한 비율
3.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과 동지역의 세분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제17조 (재원의 확보)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2.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4.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제18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약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삭제 2008-03-31>

제19조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개정 2008-03-31>) ①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3-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별 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08-03-31>

제20조 (구성과 운영) <삭제 2008-03-31>

제21조 (회의) <삭제 2008-03-31>

제22조 (소위원회) <삭제 2008-03-31>

제23조 (수당 등) <삭제 2008-03-31>

제24조 (운영세칙) <삭제 2008-03-31>

### 제5장 보칙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31호 2005-07-25>

부칙 <제4069호 2007-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3호 2008-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6호 2013-07-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

례」”로 한다.

②·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2호 2016-11-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5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5.

##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추가(안 제2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 등을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제9조)

-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중 주차장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재생정책과, 전화: 032-440-44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모델개발, 정책제안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p> <p>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략)</p> <p>⑤ <u>시장은 인천광역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u>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조(공동이용시설) ----- ----- -----</p> <p><u>제3조제6호</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u></p> <p>6. ----- -----</p> <p><u>제5호</u>----- -----</p> <p>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차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삭제>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  
-----  
-----  
-----.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  
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신 설>

<신 설>

5. (생략)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  
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  
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 도시재생사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  
-----

1. 신축·개축·재축·이전: 주  
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도시재생법

○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재생법 시행령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법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관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